

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김영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주민투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,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어
-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관련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,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투표 청구관련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 기재(안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0조 제2항)
- 주민투표청구서 등 관련서식 정비(별지 제1호~제7호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및 서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, 주민투표청구서 등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